|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소득세 감면 정책 실시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2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재세[2019]13호, 이하 '<통지>'로 약칭)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소득세 감면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형박리기업의 연간 과세대상소득 중 1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25%를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하여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간 과세대상소득 중 100만위안(100만위안 제외) ~ 300만위안의 부분은 50%를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하여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소형박리기업은 그 기업소득세 납부 방식의 실적과세 또는 인정과세를 불문하고 모두 상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이 공고에서 소형박리기업이라 함은, 국가에서 제한•금지하지 아니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연간 과세대상소득 300만위안 불초과, 종업원 수 300명 불초과, 자산총액 5,000만위안 불초과 등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업을 지칭한다.  3. 소형박리기업은 통일적으로 기업소득세 분기별 예납제를 시행한다.  기업소득세 예납 시 소형박리기업의 자산총액, 종업원 수, 연간 과세대상소득 등 지표는 잠정적으로 해당 연도의 당기 신고대상기간 기말까지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그중에서 자산총액, 종업원 수 지표는 <통지> 제2조의 '전년도(全年度) 분기 평균치' 계산공식에 따라 당기 신고대상기간 기말까지의 분기 평균치로 계산하며, 연간 과세대상소득 지표는 당기 신고대상기간 기말까지 3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기존에 소형박리기업 인정조건 미달이었던 기업이 연중에 기업소득세 예납 시 이 공고 제3조에 규정된 소형박리기업 인정조건에 도달한 경우 당기 신고대상기간 기말까지의 누계 상황을 근거로 계산하여 소형박리기업 기업소득세 감면 정책을 적용받는다. 해당 연도의 소형박리기업 인정조건 미달 기간에 초과 예납한 기업소득세 세금은 그 이후의 분기에 예납할 기업소득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월별로 기업소득세를 예납하는 기업으로 해당 연도의 4월, 7월, 10월 예납 신고 시 이 공고 제3조에 규정된 소형박리기업 인정기준에 도달한 경우 다음 예납신고기부터 분기별 예납신고로 조정하며 한번 조정이 이뤄진 후 해당 연도에는 다시 변경하지 아니한다.  5. 소형박리기업은 기업소득세 예납 및 연말정산 시 납세신고표상의 관련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소형박리기업 기업소득세 감면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6. 과세대상소득을 추계하여 기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업으로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감면 정책의 규정에 따라 추정액 감액이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기관이 절차에 따라 조정하고 적시에 조정 상황을 기업에게 고지한다.  7. 기업이 기업소득세 예납 시 소형박리기업 기업소득세 감면 정책을 이미 적용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통지> 제2조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보충납부하여야 한다.  8.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 기업소득세 혜택 정책 관철•실행 범위 진일보 확대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40호)는 2018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1월 18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实施小型微利企业普惠性所得税减免政策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2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财政部 税务总局关于实施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政策的通知》（财税〔2019〕13号，以下简称《通知》）等规定，现就小型微利企业普惠性所得税减免政策有关问题公告如下：  　　一、自2019年1月1日至2021年12月31日，对小型微利企业年应纳税所得额不超过100万元的部分，减按25%计入应纳税所得额，按20%的税率缴纳企业所得税；对年应纳税所得额超过100万元但不超过300万元的部分，减按50%计入应纳税所得额，按20%的税率缴纳企业所得税。  　　小型微利企业无论按查账征收方式或核定征收方式缴纳企业所得税，均可享受上述优惠政策。  　　二、本公告所称小型微利企业是指从事国家非限制和禁止行业，且同时符合年度应纳税所得额不超过300万元、从业人数不超过300人、资产总额不超过5000万元等三个条件的企业。  　　三、小型微利企业所得税统一实行按季度预缴。  　　预缴企业所得税时，小型微利企业的资产总额、从业人数、年度应纳税所得额指标，暂按当年度截至本期申报所属期末的情况进行判断。其中，资产总额、从业人数指标比照《通知》第二条中“全年季度平均值”的计算公式，计算截至本期申报所属期末的季度平均值；年度应纳税所得额指标暂按截至本期申报所属期末不超过300万元的标准判断。  　　四、原不符合小型微利企业条件的企业，在年度中间预缴企业所得税时，按本公告第三条规定判断符合小型微利企业条件的，应按照截至本期申报所属期末累计情况计算享受小型微利企业所得税减免政策。当年度此前期间因不符合小型微利企业条件而多预缴的企业所得税税款，可在以后季度应预缴的企业所得税税款中抵减。  　　按月度预缴企业所得税的企业，在当年度4月、7月、10月预缴申报时，如果按照本公告第三条规定判断符合小型微利企业条件的，下一个预缴申报期起调整为按季度预缴申报，一经调整，当年度内不再变更。  　　五、小型微利企业在预缴和汇算清缴企业所得税时，通过填写纳税申报表相关内容，即可享受小型微利企业所得税减免政策。  　　六、实行核定应纳所得税额征收的企业，根据小型微利企业所得税减免政策规定需要调减定额的，由主管税务机关按照程序调整，并及时将调整情况告知企业。  　　七、企业预缴企业所得税时已享受小型微利企业所得税减免政策，汇算清缴企业所得税时不符合《通知》第二条规定的，应当按照规定补缴企业所得税税款。  　　八、《国家税务总局关于贯彻落实进一步扩大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范围有关征管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40号）在2018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结束后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9年1月18日 |